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시 보

www.namwon.go.kr

| | |
|--------|-------|
| 선 람 | 기관의 장 |
| | |

제 120 호

2014. 12. 24(수)

공 고

○남원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공고.....1

| | | | | | | | | | | | |
|--------|--|--|--|--|--|--|--|--|--|--|--|
| 회 람 | | | | | | | | | | | |
|--------|--|--|--|--|--|--|--|--|--|--|--|

※ 발행 : 남원시 / 편집 : 홍보전산과 ☎(063)620-6039

남원시 공고 제2014 - 1567호

남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4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직자윤리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을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민단체 참여 규정 신설(안 제2조제1항)

- 남원시 공직자윤리위원을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

나. 남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대상 추가(안 제3조제2항)

- 남원시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및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추가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1월 7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90-701

남원시 시청로 60(도통동 518) 남원시청 감사실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팩스(063-620-6781) 및 직접방문 등

4. 기타

○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감사실(☎063-620-60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 | |
|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4. 12.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감 사 실 장

1. 개정이유

「공직자윤리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을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민단체 참여 규정 신설(안 제2조제1항)

- 남원시 공직자윤리위원을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

나. 남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대상 추가(안 제3조제2항)

- 남원시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및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공직자윤리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4. 12. 24. ~ 2015. 1. 7.(20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를 “「공직자윤리법」 제9조”로, “운영에 관”을 “운영에 필요”로 한다.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성하되”를 “구성하며”로, “시장”을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제2조 제1항제2호 중 “남원시의회”를 “남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로, “남원시”를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남원시의회”를 “시의회”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를 “위촉하려면 시의회의”로 한다.

제3조 제1항제2호 중 “「남원시 공직자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제4조”를 “「남원시 공직자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남원시 소속 5급이하”를 “시 소속 5급 이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남원시의회 5급이하”를 “시의회 5급 이하”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시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및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제3조의2 중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를 “심사·결정에”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1차에 한하여”를 “한 번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남원시의회”를 “시의회”로, “소속공무원중”을 “소속 공무원 중”으로, “임기내”를 “임기 내”로,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을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전임자의 잔임기간”을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위원의 제척)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제5조제1항 중 “직무”를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고가 있”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위원회의 회의 등)”을“(위원회의 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을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의 고발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4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6조의2 중 “남원시의회”를 “시의회”로, “감독 그밖의”를 “감독, 그밖에”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등을 행하게”를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남원시 소속공무원중”을 “시 소속 공무원 중”으로 한다.

제8조 중 “남원시”를 “시 소속”으로, “「남원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9조 중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를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로 한다.

제10조 전단 중 “법 시행령과”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과 같은”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남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남원시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남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 <p>제1조(목적) ----- 「공직자윤리법」 제9조----- ----- ----- 운영에 필요----- -----.</p> |
| <p>제2조(구성) ① 남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p> | <p>제2조(구성) ① ----- ----- ----- 구성하며----- -----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p> |
| <p>1. 3명의 위원은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p> | <p>1.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p> |
| <p>2. 2명의 위원은 남원시의회의원 1명과 남원시 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p> | <p>2. ----- 남원시의회의(이하 “시의회”라 한다) --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 -----.</p> |
| <p>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p> | <p>② 위원장----- ----- -----.</p> |

1. · 2. (생략)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남원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 1. (생략)
- 2. 「남원시 공직자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제4조에 따른 지급 대상 및 지급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생략)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 1. 남원시 소속 5급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 2. 남원시의회 5급이하 공무원 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신설>

제3조의2(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 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1. · 2. (현행과 같음)

③----- 시의회-----
----- 위촉하려면 시의회의-----
-.

제3조(기능) ① -----
-----.

- 1. (현행과 같음)
- 2. 「남원시 공직자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제4조-----

3. (현행과 같음)

② -----
-----.

- 1. 시 소속 5급 이하-----

- 2. 시의회 5급 이하-----

- 3. 시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및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제3조의2(심사기준) -----
----- 심사·결정-----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남원시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원은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은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한 번만-----.

② 시의회----- 소속 공무원
원 중-----
----- 임기 내-----
-----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

③ -----

-----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제4조의2(위원의 제척)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

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생략)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 ~ 3. (생략)
- 4. 법 제24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제6조의2(의회 등에 보고) 위원회

----- 업무-----.

② -----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

-----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 1. ~ 3. (현행과 같음)
-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의 고발

③ 제4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6조의2(의회 등에 보고) -----

는 매년 남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남원시 소속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8조(수당 등) 남원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시행령과 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

----- 시의회-----

감독, 그밖에 -----
-----.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
----- 등

② ----- 시 소속 공무원 중-----
-----.

제8조(수당 등) 시 소속 -----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
-----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

제10조(다른 법령의 준용) -----
-----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과 같은 - . ---

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
 으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
 회”는 “남원시 공직자윤리위
 원회”로 본다.

----- “정부공직자윤리
 위원회”는 “남원시공직자윤
 리위원회”-----
 ---.

의견제출서

| | | |
|------------|--|--|
| 1. 의견제출 목록 | 남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견제출 | |
| 2. 제출자 | 성명(명칭) | |
| | 주 소 | |
| 3. 의 견 | | |
| 4. 기 타 | | |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4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 | |
|-----|---|
| 비 고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